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18. 10. 15. (월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#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서 동 학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8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: 2018년 10월 4일

3. 제정 이유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선발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응시자에 대한 전형료의 징수 규정은 있으나,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선발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입학선발수수료를 해당학교(유치원)의 장이 정함(안 제2조제1항)

○ 수수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2항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안 제2조에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이 입학선발수수료 징수금액을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학교장 및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교장과 유치원장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할 것으로 사료되며,

- 안 제3조에 입학선발수수료의 면제·감액·반환 등 입학선발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은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